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0일, 이재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재관 의원)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개정안들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9, 제39조의10, 제39조의14, 제39조의15 및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9, 제39조의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u><신 설></u>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심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u>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내는 상임으로 한다. ③ <u>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 10제3항에 규정 ④ <u>가스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u>	성하되, <u>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u> ③ <u>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u>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신설>	제39조의14(의결정족수) <u>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⑥ <u>가스배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설>	제39조의15(조직 및 운영) <u>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⑦ <u>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u>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u>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u>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u>

현 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경제·경영·전기·에너지공학이나 그 밖의 가스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u>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u>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u>가스·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u>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u>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u>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u>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u> 4. <u>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u>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u>전력·가스·통신·교통 등 기간산업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7. <u>전력·가스 등 공공요금 및 망요금 체계의 산정·검증 분야에</u> <u>서 10년 이상 종사한</u> <u>경력이 있는 사람</u> ② <u>제1항 각 호의 분야가 서로 유사하거나</u> <u>관련된 경우에는 그</u> <u>재직기간을 합산할 수</u> <u>있다.</u>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u>가스산업·에너지정책·요금 및 비용 산정·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u>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u> <u>사람</u> 7.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u>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u> <u>이 되는 사람</u> ※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 9제4항에 규정 ② <u>위원이 궐위(闕位)</u> <u>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u> <u>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u> <u>기간으로 한다. 다만,</u> <u>위원장이 궐위되어</u> <u>후임자를 임명한 경우</u> <u>후임자의 임기는 새로</u> <u>시작된다.</u>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신설>	제39조의11(위원의 신분 보장) <u>가스배관위원회</u> <u>위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u>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u> ④ <u>위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제39조의8제1항),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제39조의6제2항)¹⁾.

1)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한편,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은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직수입 비중이 2024년 26%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²⁾.

연도별 LNG 도입물량

(단위 : 만톤)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국가 수입물량(A)	3,998	4,593	4,639	4,412	4,633
- 가스공사	3,082	3,735	3,922	3,475	3,410
- 자가소비용 직수입(B)	916	858	717	937	1,223
직수입 비중(B/A)	23%	19%	16%	21%	26%
평균 현물가격(\$/mmbtu)	3.83	15.04	34.24	16.13	11.83
현물시장 특징	저가시장	현물가격 상승기	고가시장	현물가격 하락기	저가시장

자료: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배관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스배관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2020~2024년 연도별 LNG 도입물량을 살펴보면, LNG 현물시장 가격 상승기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현물가격 하락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비중이 연동되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에너지경제신문, “LNG 직수입사, 현물가격 변동에 따른 선택적 구매 제한 필요”, 2024.12.9.).

있으므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가스배관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가스배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경우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기관의 반대의견과 산업통상부, 민간LNG산업협회 등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가스배관시설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가스공사 내부규정에 근거한 ‘배관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가스배관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므로³⁾,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는 행정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반면, 산업통상부는 기존 한국가스공사 내규에 따라 운영되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격상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가스공사 간 배관시설 이용관련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설치 및 구성 규모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민간LNG산업협회는 배관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배관 운영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심의되기보다 공적 책임성·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심의기구를 통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절차적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뿐

3) 「배관시설이용규정」(한국가스공사)

제45조(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는 배관시설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이하 "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2. 전문위원: 가스 산업 및 안전, 환경, 에너지 수요예측,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2인, 공사가 지명하는 2인 및 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 단체)가 지명하는 2인

제46조(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 통지) ① 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기타 가스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심의위원 과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아니라, 망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현재 가스공사 내부규정에 근거한 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 ② 관리 대상 규모 대비 조직 구성의 적정성, ③ 법률상 위원회로의 격상으로 인한 공정성 제고 효과, ④ 추가 예산 및 행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중 세부사항에서 김성원의원안과 이재관의원안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우선,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9제1항에서는 가스배관위원회의 목적을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심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배관시설이 공공재적 기간에너지 인프라인 점을 고려할 때 배관시설 이용자(직수입자)의 권익을 명시하기보다, 유사입법례인 「전기사업법」에 비추어 ‘이용자’의 권익이 아닌 ‘가스사용자’의 권익으로 수정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다음으로,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4 및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9제6항에서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적위원이 9명임을 고려할 때 재적과반수인 5인이 출석하여 위원 3인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여 의결 사항의 합리성과 대표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입법례인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스배관위원회의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또한,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0제4호 및 제6호는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가스 이외의 에너지·전력·교통·통신 등 기간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고 있으나⁶⁾,

4)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5) 「전기사업법」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28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스 이외의 교통·통신 등 분야로 경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전기사업법」에 비추어 가스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추가로, 개정안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9 제2항에서는 가스배관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배관위원회의 관리대상이 총 26개사에 불과하여 관리 규모에 비해 상임위원 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기사업법」과 같이 상임위원 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⁸⁾,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0제1항제7호 중 ‘공공요금 및 망요금 체계의 산정·검증 분야’ 및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10제6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동 조항의 다른 자격과 중복되므로 해당 자격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낮고,⁹⁾

으로 한다.

4. 가스·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력·가스·통신·교통 등 기간산업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전기사업법」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28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7.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 및 망요금 체계의 산정·검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728호,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9제3항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 조정 및 중재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역할·규모 및 정책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임명 절차 적용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다만, 대통령 임명 절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 기능의 심의위원회에 적용되는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¹⁰⁾.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 가스산업·에너지정책·요금 및 비용 산정·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2. 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개정안들은 가스공급배관의 건설 계획, 공동이용, 배관시설이용료, 가스배관 운용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2 및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u><신설></u>	제39조의12(위원회의 기능) ① 가스배관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제18조의2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중 공급배관 건설 계획 관련 사항</u> 2. <u>제11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u> 3. <u>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u>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4.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의 운영·관리 및 그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39조의7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적정성 및 부당한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중지에 관한 사항 6.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7.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 및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8.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9. 지점별 배관의 가스인입가능량 분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배관 시설이용자의 인입 여부 및 인입가능량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점별 배관의 인입가능량 분석 결과와	1. 가스배관시설 접속 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u>실제 공급 실적 간의 차이 검증에 관한 사항</u> <u>12. 배관 계통정보 및 시설운영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u> <u>13. 다른 법령에서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u> <u>14.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u> <u>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3에 따른 재정을 한다.</u> <u>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가스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u>	<u>3. 가스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u> <u>4.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u> <u>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배관위원회가 가스배관시설의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배관 이용 관련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조정되고,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관망의 공정한 이용과 망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에

서 김성원의원안과 이재관의원안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가스배관 위원회가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공급시설은 배관시설뿐만 아니라 제조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가스제조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심의는 가스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려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스 관련 시설공사계획 승인 권한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1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도지사

둘째,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2제3항에서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가스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라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리·운영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11제1항제2호는 가스배관위원회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을 ‘변경’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12)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개정안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2제1항 제1호에서 가스배관위원회가 공급배관 건설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배관 건설계획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일부로서 이를 분리하여 심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 제도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¹³⁾,

김성원의원안 제39조의12제1항제4호¹⁴⁾, 제5호¹⁵⁾, 및 제6호¹⁶⁾에서 가스배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은 이미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3)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4)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조정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15)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재관의원안 제39조의11제1항제1호에서 가스배관위원회가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속지점’은 배관망에 연결되는 지점을 의미하여 전국에 산재한 ‘공급관리소별’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인입지점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안들은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김성원의원안 제45조의2 및 이재관의원안 제4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u>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
<u><신 설></u>	1.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1.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u><신 설></u>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

현행	김성원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부도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범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판단과 운영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가스배관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위원회 및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67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0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